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715호
2022년 10월 14일
금요일

공 고

○ 공 고 제 1 1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

토 지 정 보 과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대변인실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-11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14일

남동구청장

-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139번길 9-5 (논현동)
-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9 (구월동) 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효력발생일	도로명 부여사유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고
별 도 열 램 (1건)						
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폐지일		폐지 사유		비 고
별 도 열 램 (4건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(☎032-453-2474)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. 01. 01.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,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0-2	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39번길 9-5 (논현동)	2011.3.24.	에코중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	2022.10.14.	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39번길 9-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-5를 건물번호로 부여	

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9 (구월동)	2022.10.14.	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	
2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11 (구월동)	2022.10.14.	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	
3	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18 (간석동)	2022.10.14.	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	
4	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15-5 (도림동)	2022.10.14.	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	